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5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유용원 • 김상훈

김예지 • 서천호 • 김도읍

유영하・박대출・박형수

이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,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 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 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복무기간 중 음주, 도박, 풍기문란, 그 밖의 기강 문란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복무요원의 품위 손상 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2 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	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		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	②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에는 경고처분하되, 경고처분			
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			
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. 다만,			
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			
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			
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8. 복무기간 중 음주, 도박, 풍		
	기문란, 그 밖의 기강 문란행		
	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		
	행위를 한 경우		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